[한국무역통상학회] 공익법인 신규 지정

존경하는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원님들께

우리 학회가 금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 승인을 받아 202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(3년간)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33호).

붉은 단풍이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계절에 좋은 소식을 회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 뿌듯한 마음입니다.

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.

기부자에 대한 세재혜택

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
  (한도 : 소득금액의 10%)
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
  (한도 : 소득금액의 30%)
  (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)

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. 학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
(사)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오준석 배상